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명시 〉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10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명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1.
3. 회 부 일 : 2025.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명시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u>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2026년 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시·도별 해바라기센터 설치 현황 >

(2026. 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1	5	2	2	3	2	1	1	6	3	2	2	3	3	3	2	1

< 해바라기센터 유형 >

(2026. 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주요 기능	지원 개소 수	
위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서비스 제공(경찰 배치)	41	18
아동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경찰 출장)		7
통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경찰 배치)		16

그런데,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실무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내포(內包)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대신 피해자에게 해바라기 꽃과 같이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을 주려는 취지에서 ‘해바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²⁾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5월 성폭력피해자가 진료 및 수사지원의 지연으로 3일간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아동에 대한 원스톱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6월에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개소하였음.

이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센터 개소 시 사용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또는 “원스톱지원센터”로 사용되었음.³⁾

- 예컨대 강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경우 강원원스톱지원센터와 강원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운영되다가 2012년 12월에 통합되면서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됨.

2014년 7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년 1월부터 ‘해바라기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게 되었음.

2) 성평등가족부, 『2025년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1면.

3) 서울 경찰병원의 ‘여성·학교폭력 서울 원스톱지원센터’가 2005년 8년에 개소하였고,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의정부 의료원은 2007년 9월에 개소하였으며, 해바라기아동센터도 여러 지역에 걸쳐 개소하였음.

이처럼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른 기관·시설도 법률상 명칭과 실제 사용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실제 기관·시설이 운영 과정에서 법률상 명칭과 다르게 정하는 사례가 있음.

< 법정 지원시설 명칭 관련 입법례 >

법정 명칭	실무상 명칭	근거 법 조문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3호 ⁵⁾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7조제1항 ⁶⁾
보호시설(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⁷⁾

4) [참고자료] 전국 해바라기센터 설치 현황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록 법률상 명칭과 실제 사용 명칭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개정안과 같이 명시할 경우 보다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33조 및 제38조제2항제3호8)는 이 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니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해바라기센터”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명칭의 법적 근거를

-
-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이로써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기능·성격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무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으로 ‘해바라기센터’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해당 명칭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한다는 의견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50

【참고자료】

<전국 해바라기센터 설치 현황(2026. 1월말 기준)>

시·도	명칭	운영기관(병원)	유형	소재지
서울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위기지원	서울 송파구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위기지원	서울 동작구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병원	통합	서울 종로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연세의료원	아동	서울 마포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서울시의료원	위기지원	서울 중랑구
부산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부산의료원	위기지원	부산 연제구
	부산해바라기센터	부산대병원	통합	부산 서구
대구	대구해바라기센터	대구의료원	위기지원	대구 서구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경북대병원	아동	대구 중구
인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인천의료원	위기지원	인천 동구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위기지원	인천 부평구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가천대길병원	아동	인천 남동
광주	광주해바라기센터	조선대병원	위기지원	광주 동구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전남대병원	아동	광주 동구
대전	대전해바라기센터	충남대병원	통합	대전 중구
울산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병원	통합	울산 남구
경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의정부의료원	위기지원	경기 의정부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단원병원	위기지원	경기 안산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아주대병원	통합	경기 수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명지병원	통합	경기 고양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순천향대부천병원	통합	경기 부천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분당차병원	아동	경기 성남
강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강원대병원	통합	강원 춘천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강릉동인병원	통합	강원 강릉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통합	강원 원주
충북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의료원	위기지원	충북 청주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건국대충주병원	아동	충북 충주

시·도	명칭	운영기관(병원)	유형	소재지
충남	충남해바라기센터	단국대병원	통합	충남 천안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홍성의료원	위기지원	충남 홍성
전북	전북해바라기센터	전북대병원	위기지원	전북 전주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원광대병원	통합	전북 익산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전북대병원	아동	전북 전주
전남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성가롤로병원	위기지원	전남 순천
	전남해바라기센터	영광기독병원	통합	전남 영광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강진의료원	위기지원	전남 강진
경북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안동의료원	위기지원	경북 안동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포항성모병원	통합	경북 포항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김천제일병원	위기지원	경북 김천
경남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경상대병원	통합	경남 진주
	경남해바라기센터	마산의료원	위기지원	경남 창원
제주	제주해바라기센터	한라병원	통합	제주 제주시

자료: 성평등가족부